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 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0

(전화) 02-6743-7001

[별지 제33호서식]

등부 2022년 제 29245호

인 증 서

정 관

정관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식회사

정관

制定 : 2022.07.26.

제 1 장총칙

제 1 조 (상호)

회사의 상호는 국문으로는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라하고, 영문으로는 “SamsungFNREIT Co.,Ltd.”라 한다.

제 2 조 (목적)

①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부동산
2. 부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동산 개발 사업(이하 “부동산 개발 사업”)
3.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4.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수의 권리
5. 증권, 채권
6. 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야 한다.



1.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2. 관리(시설 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3. 부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동산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부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부투법 시행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
4.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업무

제 3 조 (본점의소재지및지점의설치)

회사는본점을대한민국서울특별시에두며, 본점외의지점이나영업소는두지아니한다. 단, 최초의본점주소및장소는발기인총회에서정한다.

제 4 조 (직원및상근임원)

회사는직원및상근임원을두지아니한다.

제 5 조 (공고방법)

회사의공고는회사의인터넷페이지(www.samsungfnreit.com)에게재한다. 단, 전산장애또는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회사의홈페이지에공고할수없을때에는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고서울 특별시에서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게재한다.

제 2 장주식및주주명부

제 6 조 (발행예정주식의총수)

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는이십억(2,000,000,000)주로한다.



제 7 조 (1 주의액면금액)

회사가발행하는 1 주의액면금액은금일천원(₩1,000)으로한다.

제 8 조 (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의총수)

회사가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의총수는보통주식삼십만(300,000)주로한다.

제 9 조 (주식의종류와내용)

회사가발행할주식은기명식보통주식으로한다.



제 10 조 (주권의종류및권리의전자등록)

①회사가발행할주권은 1 주권, 5 주권, 10 주권, 50 주권, 100 주권, 500 주권, 1,000 주권, 10,000 주권의 8 종류로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제 11 조 (주식의상장)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 390 조 제 1 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 8 조의 2 제 4 항 제 1 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신주인수권)

- ① 회사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같은 종류의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의결의에 의한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회사는 이사회 의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부투법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은 부투법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의미한다)
 1. 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 또는 등록 신청 시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신주 발행 계획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제 42 조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에 대한 같은 조 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자금의 조달, 재무 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 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3. 자본시장법 제 165 조의 6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신주 발행 당시에 모든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
- ④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1 조에 의하여 회사의 주식이 상장된 이후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따른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이 전에 발행된 주식의 수는 다음 각호의 한도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1.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42 조 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자금의 조달, 재무 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

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 자본시장법 제 165 조의 6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인(회사의 주식을 소유한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어느 사업연도의 중간에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4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 취급 장소와 대행 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의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 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 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진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단, 주식에 대해 전자 등록 기관의 전자 등록 계좌부에 전자 등록되는 시점부터는 주식의 전자 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사무를 추가로 취급하되,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 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된다.

- ④ 제 3 항의 사무 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5 조 (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의 신고)

- ①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 14 조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제 14 조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제 15 조의 2 (사채 및 신주 인수권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 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제 15 조의 3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

제 14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 한다.

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5 일 동안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 한다.
- ②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의로 3 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의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가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 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현물출자)



① 회사는 부투법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부투법 제 10 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②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상법」 제 416 조 제 4 호에 따라 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부동산
2.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3.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 가수의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4.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 기청구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3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공익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③ 제 2 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제 2 항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에 따른 재산: 감정평가법인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 등”) 둘이상 평가한 금액

2. 제 2 항 제 5 호에 따른 재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8 조에 따라 산정하여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 받기로 한 금액
- ⑤ 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는 부투법 시행령 제 16 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8 조 (주식 매수 청구권)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해당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서 면으로 그 결의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사를 알리고,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주식의 매수를 제한하거나 회사의 존립 기간을 연장하는 정관의 변경. 다만, 회사 보유자산의 매각이 존립 기간 내에 불가능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립 기간을 1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2. 다른 부동산 투자 회사와의 합병
 3. 제 17 조에 따른 현물 출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
- ② 회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고,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매수 청구 기간이 끝난 날부터 20 일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의 매수가격, 매수 대금의 지급 방법 등은 부투법 시행령 제 17 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회사는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매수 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식의 매수를 연기 할 수 있다.

제 3 장 주주총회

제 19 조 (주주총회의 종류와 개최 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 주주총회는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와 관련 법률에 따라 언제든지 소집 할 수 있다.

제 20 조 (소집 권자 및 소집 통지)

-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 한다.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 1인이 소집 한다.
- ②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대표이사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각주주에게서 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 통지 기간은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단축될 수 있다. 총주주의 동의가 없는 한, 주주총회는 통지된 목적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 할 수 없다.
- ③ 제 11 조에 따라 주식 이상장된 이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 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회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2 항의 소집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제 21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본점 인접지에서도 개최 할 수 있다.

제 22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불출석하거나 주주총회의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가 정한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이사 중 1인이 의장직을 수행 한다.



제 23 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4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5 조 (주주총회의 결의 방법)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이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써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제 26 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 한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써 결의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다만, 두 기의 사업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경우, 각 단위별로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동일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두 번 확정하지 않음.
2. 해당 사업연도의 차입 계획 및 사채 발행 계획
3. 제 1 호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주주 배당수익이 30% 이상 하락할 것이 예상되거나, 총자산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동산,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계약 등 부투법 제 12조 제 1항 제 3호에 따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체결에 관한 사항. 다만, 총자산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동산 또는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라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서 이미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
4. 자산 관리 회사와의 자산 관리 위탁 계약 및 자산 보관 기관과의 자산 보관 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연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7. 배당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가 부의 한 사항
9. 회사가 제 11조에 따라 상장한 경우 제 45조 제 2항 제 2호의 거래
10. 상법 등 기타 관련 법령 상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를 요하는 사항



②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 한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써 결의한다.

1. 회사 정관의 변경
2. 상법 제 417조에 따른 액면가 미만의 주식 발행
3.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
4. 회사의 자본 감소(단,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 1항의 결의에의 함)
5. 회사의 해산
6. 다른 부동산 투자 회사와의 합병
7.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 합병
8.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9.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10. 총자산중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11. 회사의 발행 예정주식총수의 변경
12. 이사 및 감사의 해임
13. 존립기간의 변경
14. 부동산의 현물 출자에 관한 사항
15. 부동산개발사업 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 계획의 목적·대상·범위 등 부투법 시행령 제 9 조에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16. 제 45 조 제 2 항 제 2 호(단, 회사가 제 11 조에 따라 상장한 경우 제 1 항의 결의에 의함), 제 3 호 및 동조 제 4 항 제 6 호에 해당하는 거래
17. 기타 상법, 부투법 등 관련 법령 상상법 제 434 조에서 정하는 결의 방식을 통한 주주총회 결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주주총회의 회의 개시 예정 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 할 때까지 출석 한주주 가 소유 한주식의 총수가 발행 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 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 3 항에 따라 소집 된 연기 주주총회의 회의 개시 예정 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 할 때까지 출석 한주주 가 소유 한주식 총수가 발행 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 한주주의 주식 총수로 써 주주총회가 성립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 한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써 한다. 다만, 제 2 항 제 10 호, 제 14 호 및 제 15 호의 사항에 대한 연기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는 출석 한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써 한다.

제 27 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 소집 통지서에서 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의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서 송부한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총회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 한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 한다.

제 28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일의 3 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 29 조 (의결권의 대리 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회의에 출석 한 이사들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사·이사회·감사

제 31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회사는 3인이상의 이사와 1인이상의 감사를 둔다. 단,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감사의 자격에 대한 제한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경우 개정 또는 폐지된 관계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이사 및 감사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제 32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써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회사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상법 제 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는다.

④ 이사 및 감사는 부투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제 33 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정기 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 ②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 ③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달리 결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4 조 (대표이사)

회사는 이사회 의결의로 이사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단, 초대 대표이사는 발기인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35 조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 관리 회사, 자산 보관 기관, 판매 회사 또는 사무 수탁 회사에 대하여 이 회사의 업무 및 자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 상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 36 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 ②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 관리 회사, 자산 보관 기관, 판매 회사 또는 사무 수탁 회사에 대하여 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기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7 조 (이사회의구성과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의 개최일 7 일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위기간은 회의 전에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불출석하거나 이사회의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들의 과반수 찬성 투표로 의장직을 수행할 이사를 정한다.

제 38 조 (이사회의결의사항)

이사회는 법률이나 이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2. 회사 총자산의 100 분의 10 이상 금액의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3. 차입 및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4.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5. 자산 관리 회사와의 위탁 계약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자산 관리 회사에 대한 자산 관리 운용 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
7. 사무 수탁 회사와의 위탁 계약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8. 판매 회사와의 판매 위탁 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9. 제 12 조에 따른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
10.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 또는 신주 배정 시에 단주가 발생할 경우 그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사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2. 이사회의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부투법 제 30 조제 2 항 제 2 호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부동산 매매 거래
14. 부동산 매매 거래 외의 거래로서 부투법 제 30 조제 2 항 제 3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4 조제 1 항 제 1 호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거래
15. 제 50 조제 6 항에 따른 재무 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16. 기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안

제 39 조 (이사회의 결의 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과 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 조의 2 및 제398 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의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제 40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

-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매사업연도별로 결정한다. 다만,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발기인총회에서 결정한다.
- ② 이사 및 감사에게는 전항의 보수 이외의 별도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 41 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의 본점에 이를 비치 한다.

제 5 장 업무

제 42 조 (자산의 투자·운용)



- ① 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여야 한다.
1. 부동산
 2. 부동산 개발 사업
 3.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4.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 재산 전부 ~~가지~~³⁹의 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의권
 5. 증권, 채권
 6. 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 ② 회사는 제 1 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야 한다.
1.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2. 관리(시설 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3. 부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동산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부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부투법 시행령으로 청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
- ③ 회사가 그 자산은 제2항 제3호에 따른 대출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경우 부투법 및 그 시행령 상허용되는 자를 상대로 부투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야 한다.

제 43 조 (자산의 구성)

- ① 회사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 개월(부동산 투자 회사 및 이해 관계자 등이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최저자본금 준비 기간"이라 한다) 이 경과한 이후에는 매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 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 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정 기준은 부투법 제 25 조 및 부투법 시행령 제 27 조를 따른다.
- ② 제 1 항에 따라 자산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산은 최저자본금 준비 기간의 만료일, 신주 발행일 또는 부동산 매각일부터 2년이내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1. 설립 할 때 납입된 주금
2. 신주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 대금



- ③ 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부투법 시행령 제 26 조 제 4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 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고 이를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 44 조 (증권에 대한 투자)

- ① 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립 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3.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4. 회사의 권리를 행사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사용 대차 또는 임대 차에 관한 권리, 그 밖에 부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말한다)를 임차하여 해당

부동산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하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부투법 시행령 제 31 조제 1 항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기타 투자자의 보호나 자산의 안정적인 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부투법 시행령 제 31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 1 항 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의 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때에는 초과 취득하게 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제 1 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국채, 지방채, 그 밖에 부투법 시행령 제 31 조제 3 항으로 정하는 증권은 제외 한다)을 총 자산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 1 항 제 5 호에 따른 주식의 경우에는 회사 총 자산의 100 분의 25 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 제 3 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 취득하게 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5 조 (거래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정관 제 42 조제 1 항 각 호에 대하여 제 42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자본시장법 제 133 조제 3 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
2. 회사의 주식을 100 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1. 일반분양, 경쟁입찰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 당사자를 선정하는 거래
2.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특별결의(제 11 조에 따라 상장한 경우에는 일반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부동산 매매 거래
3. 주주의 이익을 침해 할 우려가 없는 부동산 매매 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4. 주주의 이익을 침해 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다만, 제 1 항 제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는 제외 한다)

5. 주주의이익을침해할우려가없는거래로서회사의합병·해산·분할또는분할합병에따른 불가피한거래

- ③회사가제 11 조에따라상장한경우제 2 항제 2 호에해당하는부동산매매거래를하는경우매매 가격은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추천하는둘이상의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받은감정평가 액을기준으로산정하여야한다. 이경우회사가매도하는가격은둘이상의감정평가액중높 은금액이상으로하고, 매수하는가격은둘이상의감정평가액중낮은금액이하로한다.
- ④회사는그자산의투자운용업무를위탁받은자산관리회사및그특별관계자와서로부동산이나 증권의거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주주의이익을침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일반분양, 경쟁입찰및이와유사한방식에의한거래
2. 회사가보유하고있는부동산을이사회가정한가격이상으로임대하는거래
3. 부투법시행령제 15 조제 1 호각목의방법에따라산정한자산가액의 100 분의 90 부터 100 분의 110 까지이내에서결정된가격에의한거래
4. 회사의합병·해산·분할또는분할합병에따른불가피한거래
5. 부투법제 20 조의 2 에따른주식의매수청구가발생하여보유하고있는증권(주식은제외 한다)을매도하는것이불가피하여이루어진거래
6. 회사의이사회의승인및상법제 434 조에따른특별결의에의한주주총회의승인을받은거 래

제 46 조 (차입및사채의발행)



- ①회사는영업인가를받거나등록을한후에자산을투자·운용하기위하여또는기존차입금및발 행사채를상환하기위하여부투법시행령제 33 조로정하는바에따라자금을차입하거나사채 를발행할수있다.
- ②제 1 항에따른자금차입및사채발행은자기자본의 2 배를초과할수없다. 다만, 상법제 434 조의결의방법에따른주주총회의특별결의를한경우에는그합계가자기자본의 10 배를넘지 아니하는범위에서자금차입 및사채발행을할수있다.

제 47 조 (업무의위탁)

- ①회사는자산의투자·운용업무, 자산의보관업무, 주식발행업무및일반적인사무를관련수탁 회사에위탁하여야한다. 회사와수탁계약을체결하는수탁회사중자산관리회사는부투법 상자산관리회사인가를받은자, 판매회사는부투법시행령제 19 조제 1 항의요건을충족하 는자, 사무수탁회사는부투법시행령제 19 조제 2 항의요건을충족하는자이어야한다.

②각수탁회사와체결 할위탁계약의개요는다음과같다.

1. 자산관리위탁계약

- 가. 자산관리회사가위탁을받아자산의투자·운용과관련된업무를수행한다는내용
- 나. 자산의투자·운용규모및대상등제반운용조건에관한내용
- 다. 업무수행시자산관리회사가지켜야할의무사항및책임에관한사항
- 라. 계약기간
- 마. 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
- 바. 자산관리회사가받는수수료의계산방법과지급시기
- 사. 기타필요한사항

2. 자산보관계약

- 가. 자산보관기관이위탁을받아자산의보관및이에관련된업무를수행한다는내용
- 나. 자산의보관대상등제반보관방법에관한사항
- 다. 업무수행시자산보관기관이지켜야할의무사항및책임에관한사항
- 라. 자산보관기간을정한경우에는그기간
- 마. 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
- 바. 자산보관기관이받는수수료의계산방법과지급시기
- 사. 기타필요한사항

3. 일반사무위탁계약



- 가. 사무수탁회사가회사의운영에관한업무, 회사자산의계산, 법령또는정관에의한통지및공고, 이사회또는주주총회의소집및개최에관한업무, 기타위탁받은사무 등을수행한다는내용
- 나. 업무수행의방법에관한내용
- 다. 업무수행시사무수탁회사가지켜야할의무사항및책임에관한사항
- 라. 계약기간
- 마. 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
- 바. 사무수탁회사가받는수수료의계산방법과지급시기에관한내용
- 사. 기타필요한사항

4. 주식판매위탁계약

- 가. 주식의발행및이와관련된업무를수행한다는내용
- 나. 업무수행시판매회사가지켜야할의무사항및책임에관한사항
- 다. 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

라. 판매회사가 받는 수수료의 계산 방법과 지급 시기에 관한 내용
마.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8 조 (위탁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 ① 회사는 자산 관리 위탁 계약 또는 자산 보관 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사무수탁 회사 및 판매 회사와의 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는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제 6 장 회계

제 49 조 (사업연도)

- ① 회사의 사업 연도는 매년 2 월 1 일에 개시하여 같은 해 4 월 30 일에 종료하고, 5 월 1 일에 개시하여 같은 해 7 월 31 일에 종료하고, 8 월 1 일에 개시하여 같은 해 10 월 31 일에 종료하고, 11 월 1 일에 개시하여 다음 해 1 월 31 일에 종료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최초 사업 연도는 회사 설립 등기일에 개시하여 2023년 1 월 31 일까지로 하며, 최종 사업 연도는 이 회사의 해산일에 종료한다.

제 50 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 및 공고)



-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 회기일의 6 주간 전에 이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현금흐름표
 6. 회사가상법 제 447 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 재무제표
 7. 위 1 내지 6 의 주석 및 부속 명세서
- ② 회사가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는 제 1 항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 주내에 감사 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제 1 항의 서류와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 1 항 각호의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⑦ 제 6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대표이사는 제 5 항 또는 제 6 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1 조 (투자보고서의 공시 등)

- ① 회사는 그의 자산 관리 회사를 통하여 다음 표에 따라 사업 연도별로 분기마다 회사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구분	투자보고서 작성일	투자보고서 제출, 공고 기한
1	회계기간의 말일 단,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되는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에는 해산일 또는 합병일을 말함	(작성일이 해산일 또는 합병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90 일 이내
		(작성일이 해산일 또는 합병일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45 일 이내
2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 3 개월이 종료되는 날(회계기간의 말일은 제외)	작성일로부터 45 일 이내

- ② 제 1 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주주구성 및 주요 주주 현황, 자산구성 현황 등 자산 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부투법 시행령 제 40 조 제 3 항으로 정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 그의 자산관리회사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부투법 제 37 조제 3 항, 제 4 항 및 부투법 시행령 제 40 조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1.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최근 3년 이내의 경력
2. 부투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2 항에서 정한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3.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
4.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 설명서의 변경 등 부투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3 항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④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른 공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서 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다만, 회사가 제 11 조에 따라 상장한 경우 등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부투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5 항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3. 부투법 제 49 조의 6 제 1 항에 따른 부동산 투자 회사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는 방법

제 52 조 (자산의 평가)

회사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에 의하는 방법. 다만,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경과 한 경우에는 감정 평가업자가 부투법 시행령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60 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3. 금융기관에 의 예치금의 경우: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4. 그밖의 자산의 경우: 대차 대조표상의 금액에 의하는 방법

제 53 조 (이익의 배당)

- ① 회사는 매 사업 연도 별로 주주총회 또는 제 50 조제 6 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 458 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 한다.
-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 462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부투법 시행령 제 32 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범위에서 초과 배당할 수 있다. 다만, 초과 배당으로 인하여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 가능 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 한다. 초과 배당은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 11 조에 따라 상장한 경우, 총 자산에서 100 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 연도 말 10 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 54 조 (이익 배당 의지금)

- ① 배당금은 정기 주주총회 또는 제 50 조 제 6 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의로 승인을 받아 매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되, 지급 방법 및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② 회사는 이익 배당을 정기 주주총회 또는 제 50 조 제 6 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의를 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5 조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 지급 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 7 장 해산

제 56 조 (해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존립 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의 해산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 판결
6.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7. 부투법 제 3 조부터 제 7 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8. 설립 후 1 년 6 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제 8 장 주주 보호

제 57조 (주주보호에관한사항)

- ① 회사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자산을 투자·운용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58조 (주주보호를 위한 임원의 행위준칙)

- ③ 회사의 임원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3. 부동산 거래 질서 또는 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부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행위
- ④ 회사의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9 장 보칙



제 59 조 (법규적용등)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상법」 기타 법령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 60 조 (발기인의 성명등)

발기인의 성명, 주소 등은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부칙<2022.07.26. 제정>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022년 07월 26일

발기인 상호 제일엠앤이 주식회사

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16 층(역삼동, 삼성제일빌딩)

대표이사 정정식

사업자등록번호 220-88-09433

법인등록번호 110111-4490887

인수한주식: 보통주식 300,000 주



[별지 제40호서식]

등부 2022년 제 29245호

인 증

위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의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 제일엠앤이주식회사 의 대리인 윤양수 는 -----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정관의 기명날인은 본인이 자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의 대리인이 제시한 자동차운전면허증 -----

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

2022년 07월 26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0

공증담당변호사

319213

